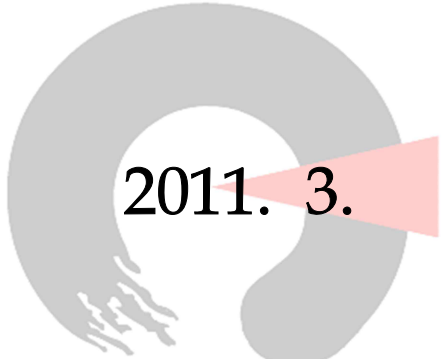

**교육 취약계층 창의력 증진을 위한
‘11년 나눔발명교육 운영사업 제안요청서**



2011. 3.

**국제지식재산연수원
창 의 발 명 교 육 과**

I. 사업개요

1. 사업명

- 사업명 : 2011 나눔발명교육 운영
- 사업 수행기간 : 계약일 ~ '11.11.30(약 8개월)
- 사업 예산 : 300백만원(부가세 포함)

2. 추진배경

- (현황 및 문제점) 발명교실 등에서 시행되는 발명교육은 우수학생중심의 심화교육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미흡
- (추진방향) 교육·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소외지역 청소년의 창의력을 증진하는 발명교육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
 -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는 계기를 마련

3. '10년 주요실적

- 소외지역·계층 발명체험교육 「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」 운영
 - 보육원,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발명체험 교육 실시 (40회 1,449명 교육)
- 발명교육 취약지역 학생 초청 「나눔발명캠프」 개최
 - 도서·벽지 학교, 다문화가정 학생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을 초청하여 심화된 발명체험교육 제공 (5회 498명 교육)
- 소외계층 방과후 발명교육과정 「나눔발명체험교실」 운영
 -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5주 과정을 개발하여 방과후 발명체험교육 연간 운영 (10회 184명 교육)

II. 주요 과업내용

1.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 실시(50회)

- 교육기관 선정 :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
 - 교육 대상 : 도서벽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학생
 - 교육 인원 및 시간 : 30~50명(1회) / 3~4시간(1회)
- 행사 운영 : 강사비, 재료비 등 행사 운영 전반
- 교육 내용 : 발명체험 위주의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
 - (초등 저학년) 감성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발명품을 활용하여 발명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
 - (초등 고학년) 지역적 교육환경을 고려한 발명아이디어 발상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교육
 - (중학생 이상)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집단 중심의 프로젝트형 체험 프로그램
- 기타 사항
 - 3~4시간 분량의 교수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3종(초등 저학년, 초등 고학년, 중학생 이상) 제시
 -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역 발명교실 교사들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·운영
 - 나눔발명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협의회(연 2회) 개최
 - 창의력 증진도서 및 학습용 교구재 기증
 -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(교육 종료 1주일 이내)
 - 나눔발명교육체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 자료 제시

2. 나눔발명캠프 운영(6회)

- 교육기관 선정 :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
 - 교육 대상 :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 수료자
 - 교육 인원 : 100여명(1회)
 - 교육 시간 :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
- 행사 장소 :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)
 - 강의실 및 기숙사 등 교육시설은 연수원에서 무료로 제공
- 행사 운영 : 강사비, 재료비 등 행사 운영 전반
 - 학급당 교육인원이 30명을 넘지 않게 배치하며, 교육기간 중 보조 강사 및 안전 요원 등을 배치
- 교육 내용 : 발명체험, 발명창조, 문화체험 등 주제별로 제시
 - (발명체험활동) 발명마술공연으로 재미있게 발명원리에 접근하고 시민천문대 별자리 관측, 국립중앙과학관 탐방 등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체험
 - (발명창조활동) : 발명품의 제작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해 보기, 잡동사니 아이디어 장치 만들기 등 팀워크를 통해 창의력 배양
 - (도시문화체험) 대전도심의 교육·문화 인프라를 이용한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생활 문화를 체험
- 기타 사항
 - 2박 3일 과정의 교수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3종(초등 저학년, 초등 고학년, 중학교 이상) 제시
 - 행사 진행, 차량 운영, 행사 물품 등 행사 계획 제시
 - 캠프 운영시 인솔교사 대상 별도 발명연수과정 편성·운영
 -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(교육 종료 1주일 이내)

3. 나눔발명체험교실(12회)

- 교육기관 선정 :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
 - 교육 대상 : 대전·광주지역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
 - 교육 인원 : 30여명(1회)
 - 교육 시간 : 3~4시간(1회)
- 행사 장소 :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) 및 교육신청 기관
 - (1주차) 연수원의 발명체험실 등을 활용
 - (2~5주차) 교육신청 기관의 강의실 등을 활용
- 행사 운영 : 강사비, 재료비 등 행사 운영 전반
 - 학급당 교육인원이 30명을 넘지 않게 배치하며, 교육기간 중 보조 강사 및 안전 요원 등을 배치
- 교육 내용 : 발명아이디어 발상부터 간단한 시제품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5주에 걸쳐 교육

< 발명체험교실 프로그램(예시) >

구분	1주차	2주차	3주차	4주차	5주차
교육 내용	발명의 이해	아이디어 발상	아이디어 수렴	아이디어 정교화	발명프로젝트 (조별 아이디어 산출 및 발표)

- 기타 사항
 - 3~4시간 분량의 교수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
3종(초등 저학년, 초등 고학년, 중학생 이상) 제시
 - 이론과 실습 활동이 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제시
 - 행사 진행, 차량 운영 등 행사 계획 제시
 - 교육 주차별 전담 강사 및 보조 강사 활용방안 제시
 - 교육기관별 결과보고서 제출(교육 종료 1주일 이내)

Ⅲ. 주요 보고사항

1. 착수보고서

- 선정 제안사는 계약일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서를 작성·제출
- 주요 내용
 - 사업목적, 사업범위, 기대효과
 -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
 -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등

2. 주간·월간보고서

-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·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 진행 사항,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방안 등에 대한 주간·월간 보고서를 작성·제출
- 주요 내용
 -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
 - 주요 추진내용 및 결과내역
 - 인력 투입현황
 - 차주·월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사항
 -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

3. 최종보고서 제출

-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서 최종보고서를 작성·제출

IV. 제안서 작성방법

1. 제안서 목차(안)

I. 제안개요

1. 제안배경 및 목적
2. 제안사업의 방향성 및 원칙

II. 제안업체 일반

1. 일반현황 (연혁, 조직, 매출액, 주요사업내용 등)
2. 주요 사업실적
3. 사업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(*자문위원 미포함)
4.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

III. 사업수행 부문

1. 사업추진목표 (*정량적, 정성적 목표 제시)
2.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전략 개요
3. 사업추진내용(*세부과업내용 및 추진일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술)
4. 사후관리 지원방안
5. 기대효과

IV. 사업관리 부문

1. 세부 일정계획
2.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

<붙임> 각 과정별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등

※ 제시된 목차외의 내용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

2. 제안서 작성요령

- 제안서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
-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,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 기술
-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, “~를 제공할 수도 있다”, “~이 가능하다”, “~을 고려할 수 있다”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
-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
-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제안 가능하며,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

3. 제안서 효력

-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·보완·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4. 제안 유의사항

-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
- 제안자는 심사위원 구성, 심사기준,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V. 입찰 및 낙찰 방식

1. 입찰 방식

- 공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 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
2. 낙찰 방식

- 기술능력·입찰가격 평가결과 종합평점 상위점수 순서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
 - 기술평가 80점,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
 -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획득 사업체는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
 - 종합평점이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
-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협상은 생략

VI. 평가방법

1. 제안서 심사절차

- 심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
- 일시 및 장소 : 특허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, 추후 공지
- 제안업체는 20분 발표,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제안서 심사 실시

2. 기술능력 평가

- 기술능력평가는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,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최종적인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함
-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
-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

구 분		평가항목	배 점
기술 평가	수행기관 전문성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	-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및 일치성 - 문제파악의 정확성 - 업무이해의 완전성 - 유사사업 수행실적	20
	인력·조직 관리능력	- 투입인력의 적정성 -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- 추진일정 및 보고 계획의 적정성	20
	사업수행능력	사업수행의 수행능력 및 구체성 - 사업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- 과업범위 및 내용수행 능력의 적절성 - 과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-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	30
		추진전략 차별성 및 독창성 -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의 차별성 및 독창성 -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	20
	사후관리 능력 등	- 지속적인 유지관리(향후 교육과정운영 참여 등) - 기밀보장성 - 방법론의 공유(노하우) - 하자담보 등 사후관리 능력	10
합 계			100

3. 입찰가격 평가

-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

$$\text{평점} = \text{가격평가 배점한도}(20) \times (\text{최저입찰가격}/\text{당해입찰가격})$$

-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-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-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-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

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begin{aligned} \text{평점} = &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} \right) \\ & + \left[2 \times \left(\frac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 - \text{당해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상당가격} - \text{추정가격의 60\%상당가격}} \right) \right] \end{aligned}$$

-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-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-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4. 기술능력·입찰가격 종합점수 산출

-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(기술능력평가 점수 × 0.8)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

VII. 기타사항

1. 사업비 사용

- 사업책임자의 소속기관은 분야별 계약 체결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
- 엄격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함

2. 사업비 관리

-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책임자의 소속 기관장이 중앙관리함.
단,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
 -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
 -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-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았을 때
 - 사업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
 -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(표절 등)로 하였을 때
 - 기타 사업책임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
 - 타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관계로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

3. 기타

-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에게 귀속됨
 -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, 개발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